

판례로 본 건설분쟁

자료제공 『알기쉬운건설분쟁사례해설집』 건설경제신문사

[판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사실상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다43370 판결)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채권의 성립과 변제기

쟁점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판단	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의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변제기]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변제기이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관습에 따르고, 관습도 없다면 약정한 공사를 완성한 때 또는 공사를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가 변제기이다(민법 제665조).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함을 요한다(대법원 67다639 판결).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이 완성한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도급인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은 수급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공공공사의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

국가는 30일마다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준공검사 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국가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즉 대가지급지연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지(한국은행 통계연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

이와 같은 지연이자율은 공사가 완성되어 목적 물이 인도되었음에도 국가가 지급하기로 확정된 기성대거나 준공대가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국가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당초 약정한 계약상의 공사대금 이외에 그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있는 추가비용에 대하여서까지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다41451 판결).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쟁점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얼마인가?
판단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이 3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하면서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하여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라든지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의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다21029 판결).

약정한 공사 도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홍수피해 복구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홍수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아니면 당초 약정한 지하철공사를 모두 완료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대법원은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구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2003다41451 판결).

[판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에정지지정신청 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공사완성 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86다카2549 판결)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94다17185 판결)